

한·칠 FTA 협상 타결 내용과 영향



농업도 자유화 대상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심각할 듯



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 국과 칠레는 지난 1998년 11월 양국 정상들이 자유무역 협정(FTA) 추진에 합의한 이후 1999년 12월 협상을 시작하여 2002년 10월 24일 이를 타결하였다. 여섯 차례의 공식 협상과 수 차례의 분야별 협의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합의한 것이다. 개방적 경제 정책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 FTA 체결에서 칠레를 첫번째 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는 한국과 칠레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라는 점 외에도 거리와 계절의 차이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와 이미 다수의 FTA를 체결한 경험이 있는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한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난관도 많았다. 우선 농업 강국 칠레를 첫번째 FTA의 대상국으로 선정한데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극심했다. 비단 과실류 생산 농가 뿐만 아니라 축산과 경종농업 부문까지 FTA 체결을 기정 사실화 할 경우 WTO 뉴라운드보다 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칠

래의 제조업계도 마찬가지 이유로 반발이 확산되어 제4차 협상이 끝난 2000년 12월 이후 약 1년 8개월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다. 양국 통상장관 회의를 거쳐 협상이 재개되었지만 최근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칠레의 금융시장 개방 문제로 또 다시 진통을 겪는 우여곡절 끝에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농업분야 협상 결과

한·칠레 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의 하나인 농산물 시장개방에 관한 양허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민감품목으로 지적되었던 사과와 배를 쌀과 함께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농업분야 전체를 예외로 한 싱가포르와 일본간 FTA와는 달리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수입 급증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극히 민감한 일부 품목은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칠레는 한국산 냉장고와 세탁기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한국은 품목 수 기준 전체의 94.5%, 칠레는 96.5%에 대한 관세를 10년내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관세할당량(TRQ) 제공과 DDA 이후 재협상, 일부 품목은 16년내 관세철폐, 계절관세 부과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농업 생산과 농가 소득에 미치는 피해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게 되었다. 그 대신 칠레는 가장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승용차용 타이어와 섬유 및 의류, 그리고 철강제품 등의 관세 철폐 기한을 최장

13년으로 연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개방도 제외함으로써 FTA 체결에 따른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과의 FTA 체결 경험을 십분 활용하는데 성공하였다.

협정문 가운데 원산지 규정은 제3국에서 수입한 물품이 우회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양국간 원산지 규정은 공산품보다 농산물에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원칙적으로 4자리 HS가 변경되어야 칠레산으로 인정해 되 육류와 신선과실류는 완전 칠레산만 인정하고 과실조제품 등 가공식품은 세번변경기준 외에 부가가치기준을 병용키로 하였다. 따





‘FTA 열풍’ 농업 설땅 앗아가는 결과, 한국농업 미래 첨첩산증 농업의 공익적 역할 매우 소중, 국민공감 위해 농업계 단결해야

라서 역외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가공하여 HS 번호가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증가해야만 관세가 면제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산물에만 적용되는 양자간 세 이프가드 제도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수입금증에 따라 피해 발생이 우려되면 WTO에 제소하지 않고도 긴급피해구제제도를 용이하게 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농업 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한·칠레 FTA 체결에 따라 수입 또는 수입 증가가 우려되는 농산물 가운데 사과와 배는 제외되어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포도는 11월부터 4월 까지 매년 10분의 1씩 세율이 인하되는 계절 관세 부과로 가온재배 시설포도의 수입 증가

가 예상된다. 복숭아와 키위, 포도 농축액 및 돼지고기도 관세가 매년 10분의 1씩 인하되어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TRQ가 제공되는 과실류(자두 280톤, 감귤 100톤)와 닭고기(2,000톤), 유장(1,000톤)도 시장접근률량에 대한 관세 면제로 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과실류는 국산과 출하시기가 중복되지 않아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지만 대체 작물 수요 감소로 인한 간접 피해가 예상된다. 과실류에 대한 기존 관세율이 45% 이상으로 높아 관세 철폐시 수입 증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주세법 개정으로 결음마를 시작한 국내 포도주 산업은 칠레산 포도주에 대한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됨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칠레간 FTA 출범이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효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무역창출효과로서 지금까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수입이 불가능하던 품목의 수입이 개시되거나 수입량이 증가하는 효과이다. 포도와 포도주 및 농축액 수입량 증가와 복숭아 수입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이 경우 포도나 기타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 농가는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경제이론상으로는 무역창출효과야말로 시장 확대로 인해 국가 후생 수준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기대 효과로 간주된다.

두번째, 무역전환효과로서 기존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던 품목의 수입선을 칠레로 전환하는 효과이다. 키위와 돼지고기의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 증가와 쇠고기와 유장의 TRQ 물량 수입 효과가 여기에 속하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생산자에게 큰 피해가 없지만 역외국과 무역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안은 예외 인정과 점진적 관세 인하로 무역전환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업부문의 대응방안

WTO라는 다자체제의 출범에 이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FTA 열풍은 우리 농업이 그나마 설 땅마저 잊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최근 아세안과 중국이 FTA 체결을 위한 기본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한·중·일 FTA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만큼 한국 농업의 미래는 갈수록 험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 시장개방인 WTO와는 달리 자발적

관세 철폐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는 당연히 보상되어야 한다. FTA 체결의 수혜 부문이 있는 반면 피해부문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소득보상은 당연한 것이다. 이미 정부도 FTA 체결로 인한 농가피해대책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날로 높아만 가는 개방화와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각각의 FTA 체결에 따른 농가소득보상은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 해도 농업은 여러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날로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속에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농업선진국 호주에서 조차 농업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영농여건이 열악한 우리 농업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품목별 경쟁력 제고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식량안보와 환경보전, 그리고 생태계 유지와 부분 취업에 의한 실업자 흡수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한다면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과감한 재정 지원을 망설여서는 안된다. 국가안보라는 서비스 외에 아무 것도 생산하지 않는 국방비 지출을 예산 낭비라 할 수 없듯이 국토 유지와 식량안보,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work) 확보라는 농업의 공익적 역할은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도출을 위해 농업계가 일치단결하여 앞장서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